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3676-6308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20404-1
시행일자 2022. 04. 04.
담 당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 제도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비공개 답변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지만, 식약처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하였다.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규탄한다.

지난 2월 10일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종합대책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약품 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상실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건약은 작년에 식약처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이다.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의 과업내용에 따르면, 연구는 주로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 및 ‘외국 제도와 비교’, ‘제도개선 및 지원의 필요사항 발굴’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해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의약품 공급 혼란을 막기 위해 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

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제도로 인해 가수요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들은 바 없다. 연구결과 공개가 의료현장 및 환자의 불안감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공자금이 투자된 연구, 특히 공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일수록 소수 공직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기관이 시민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성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공직자의 특권의식일 뿐이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공공 연구의 정보공개라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약은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행된 심의회의 회의록 공개 및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공개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4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붙임 :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붙임: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 비공개 결정 통지서

1.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결정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V]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8884332

접수일 2022. 02. 14.

청구 내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공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입니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 계약과 관련한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대상 계약:

- 계약건명: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 조사'
- 계약번호: 20210315CA700
- 계약 및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형식)
- 계약업체: 한국필수의약품센터 (담당자: 김은빈)
- 계약체결일자: 2021년 3월 26일

<공개 청구내용>

1. 대상 계약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
2. 대상 계약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3. 대상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기록된 회의록 및 공문서
4. 대상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중간보고서
5. 대상 계약의 결과에 대한 발표자료
6. 대상 계약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국방 등 국익침해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귀하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888433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청구내용: 2021년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체계 개선 조사 관련 연구에 대한 결과 공개 요청</p> <p>2. 정보공개여부: 비공개</p> <p>3. 비공개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

제 목 이의신청 ([V]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8884332

접수일 2022. 03. 15.

이의신청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1항 2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청구인이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회생시켜야 할 정도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청구인의 구체적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고 보는데, 청구한 해당 조사보고서의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운영되었던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해외제도와 비교, 제도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발굴 등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공적인 연구조사 공개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의 공익보다 현저하게 침해될 국가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5호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정책용역보고서는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국가기관이 수행한 공공연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합니다.

심의회 개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최 [<input type="checkbox"/>] 미개최 (사유:)		
결정 내용	<p>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8884332) 및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여부 최종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 1. 청구내용: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체계 개선 조사 관련 연구에 대한 결과 등 공개 요청 </p> <p> 2. 정보공개여부: 부분공개 </p> <p> 1), 2) 공개 3), 5) 부존재 4), 6) 비공개(비공개 사유는 아래 내용 참고) </p> <p> 3. 비공개사유 </p> <p>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p> <p> - 의료 현장 및 환자의 불안감으로 인한 가수요 발생 우려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p> <p> -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p>		
공개 일시	2022. 04. 01. 17 시	공개 장소	